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764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전재수·이재관·복기왕

송재봉 · 송기헌 · 김정호

허성무 • 전진숙 • 서삼석

김태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고, 이전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의 대학(대학원 포함)으로 진학한 사람은 지역인재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서비스의 구매증대를 위한 우선 구매 정책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며,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학(대학원 포함) 졸업자는 지역인재의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의무대상에 포함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비율을 정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행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에조세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9조의 2제1항, 제29조의2제7항ㆍ제8항 및 제29조의3제1항 등).

법률 제 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본문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지방대학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또는"으로, "졸업하였거나"를 "졸업(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였거나"로,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매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비율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채용 비율에 지역인재가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채용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 ⑤ 정부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이전공공기관을 선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지역발전에 기여한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조세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를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의5제1항 중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으로,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를 "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매 증대를 위한"을 "우선 구매 비율을 반영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 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 역인재 채용 등) ① -----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 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 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고등교육법」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 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 한다). 지방대학원(「수도권정 등교육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를 말 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 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 항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 또는----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 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 -----졸업(수료를 포함한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 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 이하 같다)하였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제외한다.

② ~ ⑥ (생 략) <신 설>

<u><신</u>설>

매년	신규채용	-인원	대비	100분
의 50) 이상의	비율	<u>로</u>	

② ~ ⑥ (현행과 같음)

①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채용 비율에 지역인재가 미달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전지역에서 고 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 다)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학 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 하여 채용할 수 있다.

8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등의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전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공 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④ (생 략) <u><신 설></u>

<신 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전공
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부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
여도가 높은 이전공공기관을
선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지역
발전에 기여한 추진실적을 고
려하여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조세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거나 보
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	<u>미스에</u>
<u>이전공공기관</u> 이 이전하는	지역
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스	<u> </u>
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저	H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측	<u> 추진하</u>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 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 나 서비스의 <u>구매 증대를 위한</u>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③ (생 략)

#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u>이전공공기관</u>
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
<u>다.</u>
②
<u>우선 구매 비율을 반</u>
<u>영한</u>
③ (현행과 같음)